



한국항공보안학회 2023년 춘계학술대회



항공기내보안 혁신을 위한 역량강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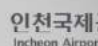
일시: 2023. 6. 9 (금) 14:00-17:30

장소: 국립항공박물관 대강당


주관, 주최:  KAFAS
한국항공보안학회
The Korea Association For Aviation Security

후원:  Incheon Airport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Korea Airports Corporation

 인천국제공항보안
Incheon Airport

 ASP
항공보안파트너스(주)
SAFETY TO EVERYONE

경운대학교  LINC

 JEJUair

ASIANA AIRLINES 

 JIN AIR

 DONGGOK
PRECISION

2023년 춘계학술대회 세부일정

□ 【세부 일정】

시간	주요내용	
13:30~14:00	• 등록 및 접수	
14:00~14: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식 - 개회사 : 황호원 한국항공보안학회 회장 - 환영사 : 김홍목 서울지방항공청장 - 축 사 : 여형구 항공대 석좌교수(전 국토교통부 차관) - 기념촬영 	
제1세션 14:20~15:40 (80)	* 사회자 : 안주연 박사 (한국항공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발표 1 - 항공기 보안강화를 위한 제도적, 운영적 개선 방안 	김용욱 상무 (대한항공 항공안전보안실) 박관홍 팀장 (대한항공 항공보안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발표 2 - 기내불법방해행위 대응을 위한 항공객실승무원의 교육훈련 강화 방안 	박수진 교수 (인하공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발표 3 - 기내 불법방해행위에 관한 기장의 권한 	안희복 기장 (한국항공대학교 박사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발표 4 - 잠재적 사이버위협에 대한 기내보안 역량 강화 방안 	전상훈 교수 (극동대학교)
15:40~15:50	• 연구윤리교육 - 박원태 교수(청주대학교)	
15:50~16:00	Break Time	
제2세션 16:00~17:30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널토론 : 항공기내보안 혁신을 위한 역량 강화 방안 	* 좌장 : 황호원 교수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항공보안학회 회장)
	박원태 교수(청주대학교), 박철성 차장(아시아나항공), 진홍찬 팀장(제주항공), 성호준 팀장(진에어)	
17:30~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회 • 한국항공보안학회 임시총회 	
18:00~	• 저녁만찬 (장소: 김가네설령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 회 사



항공보안 혁신을 위한 역량강화

힘든 코로나 위기도 극복하고 이제 점차 활기를 찾으며 각 항공사가 빠르게 예전의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어 희망찬 내일이 기대가 됩니다. 이는 우리 항공인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협조하며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응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항공보안학회원 뿐만 아니라 여러 항공 분야에서 수고하신 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겠으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최근 발생한 예기치 않은 항공보안 사건으로 말미암아 항공업계는 뜻하지 않은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공항에서의 연이은 보안검색의 실패와 항공 보안에 대한 항공객실승무원의 미흡하고 허술한 대처로 심각한 불안감을 야기하였습니다.

항공보안분야에 있어서는 그동안 아무리 잘 해왔어도 단 한번의 보안 실패로 인한 타격은 다른 분야보다 훨씬 치명적입니다. 지금은 항공보안의 총체적 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항공보안에 있어서 숨겨져 있던 허점을 찾아 대책을 강구하는 등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경고 메시지를 겸허하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항공보안학회는 지난 4월 3일에는 “항공보안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 세미나를 국회에서 개최하였고, 연이어 4월 28일에는 “항공보안검색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공항 보안에 대하여 여러 획기적인 방안을 연구, 발표 및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이번에는 “항공기내보안 혁신을 위한 역량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특별히 항공사 보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1974년부터 기장과 객실 승무원에게 운항 중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항공기의 안전과 승객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취지입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자신의 직무에 한해서 수사권을 갖는 공무원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그 역할 수행에 곤란한 점을 분석하고, 향후 안전한 운항을 위한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할 듯 합니다.

이를 위하여 금번 우리 한국항공보안학회 2023년 춘계학술대회에서는 항공사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장의 권한 및 객실승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토론하며 최근 불거지고 있는 신종 위협인 기내 사이버 보안에 관한 문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항공보안’은 다른 분야와 달리 경쟁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요구되는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협력하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고 또한 성과도 아주 뛰어남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항공보안인’은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갖고 뭉치는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타 학회와 달리 우리는 학계와 실무 및 정부 등 관련기관의 협력이 활발하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한국항공보안학회는 2014년 창립한 이래로 항공보안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학회는 “혼자 배우면 바보가 된다”는 ‘탈무드’의 말처럼 각자 고립되기 보다는 서로 모여 논쟁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견해와 시각을 통하여 새롭게 생각하는 창의성을 갖추고 나아가 문제를 해결하는 ‘토론의 장’ 역할로 항공보안발전에 이바지해왔습니다.

항공보안요원으로서 임무를 성공리에 수행하기 위하여 기내 범죄에 대한 대처 능력과 항공 객실승무원의 훈련과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는 등 시급한 주제를 함께 논의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세미나가 그동안 연구한 많은 항공보안의 현안문제를 검토하며 개선방안을 토론하는 등 서로의 지혜를 모아보는 소중한 기회이길 확신하며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번 학회에 꼭 참석하시어 항공보안의 발전을 위하여 뜨거운 격려와 탁월한 고견을 들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향후 연구과제 및 개선 방향을 정립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3. 6. 9

(사)한국항공보안학회 회장 **황 호 원**



환 영 사

존경하는 항공보안 전문가 및 교수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항공보안 관계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2023년 '항공보안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와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항공기내 보안 혁신을 위한 역량강화 방안을 탐구하고 토론하는 귀중한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항공보안 확보를 위해 공항운영자등과 합심하여 원형엑스레이검색기, CT 엑스레이검색기 등 첨단장비를 확대하고,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한 신원확인 등 스마트한 공항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장 안전한 공간인 항공기객실에서 승객이 실탄을 발견하여 기내 보안요원에게 신고하는가 하면, 며칠 전에는 탑승객이 착륙을 앞둔 항공기에서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는 사고 등 항공현장에서 다양한 항공보안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주요공항 여객은 코로나 이전상태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은 약 65%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연말이면 90%까지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객의 증가에 따라 항공기내 보안에 대한 위협도 그만큼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정부는 항공기내 항공보안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오늘 학술대회가 항공기내에서 발생하는 보안사건의 근절을 위한 의미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항공보안 미래를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주신 황호원 회장님을 비롯한 보안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항공기내보안 역량 강화를 논의하는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6. 9

서울지방항공청장 김 홍 목

축 사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황호원 한국보안학회장과 회원 여러분,
2023년 춘계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먼저,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 「항공기내 보안혁신을 위한 역량 강화 방안」은 최근 항공보안(air security)의 중요성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 환승여객의 월담 등 공항보안(airport security) 사고와 함께 항공기내 실탄 발견, 비행중 비상출입문 개방 등 기내보안(flight Security) 사고가 발생하여 항공안전 및 보안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공안전을 해치는 여러 요인중 항공보안,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내보안이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다양한 형태의 범죄행위(unlawful interference)등으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이며 사고의 유형에 따라서는 비단 탑승객의 안전문제는 물론 공권력의 무력화, 사회·정치·외교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항공기는 다른 교통수단과는 달리 철저히 통제되고 제한된 공간에 수많은 여객과 화물을 싣고 공중에서 운항되는 특성상 기내보안성 확보가 매우 어려운 만큼 항공기에 대한 기본적 보안책임을 가지고 있는 항공사는 기내의 불법 방해 행위 등으로부터 항공기와 탑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련 보안 규정과 절차를 완벽하게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항공사의 항공보안 수준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종 보안사고가 날로 지능화되고 복합적이며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항공사는 회사의 최고 가치를 항공보안에 두고 현장중심의 경영활동을 통해 공항과 기내에서의 보안성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공사가 항공 이용객들에게 보답하는 길은 안전을 뛰어넘어 안심할 수 있는 항공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도 항공사, 공항당국 등과 협력하여 관련 법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기에 정비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에서 다루어질 항공기 보안 혁신 강화를 위한 제도적 운영적 개선방안과 기내불법방해행위에 대한 객실 승무원과 기장의 권한과 역할 강화, 잠재적 사이버 위협 대처 등의 내용은 항공종사자 모두에게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학회에서 마련한 이 자리가 항공보안과 관련하여 생산성있는 열띤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모두가 항공보안이 전제하지 않는 항공운송산업 활동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춘계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항공대 석좌교수
(전 국토교통부 차관)
여 형 구



(서 면)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 김희국입니다.

‘항공 기내보안 혁신을 위한 역량강화방안’을 주제로 진행되는 『2023년 춘계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한국항공보안학회 황호원 회장님을 비롯한 한국항공보안학회 회원 및 관계자 여러분, 발표 및 토론자 등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항공 산업에는 반가운 소식과 우려스러운 소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지난 25일 성공하였고, 나쁜 소식은 최근 연이은 항공보안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입니다.

항공산업은 산업유발효과가 큰 최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항공기 제작, 서비스, 항공운송 등 파급력이 큰 산업인데, 여기에 발사체와 인공위성 기술까지 성공하여 우주산업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업계와 학회 등 협력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심각한 항공보안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항상 사고는 가까운 곳에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회에서 그간 많은 노력을 해왔듯이 최신동향 연구를 통해 대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철 성수기를 맞이하여 항공여객이 증가할 시점에 항공기 기내보안 에 대한 오늘 학술대회는 시기적절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학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앞으로도 항공보안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항공산업이 지속 성장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정기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수준 높은 학술지를 펴내는 한국항공보안학회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저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항공 보안산업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항공보안학회의 『2023년 춘계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김 희 국 의원



(서 면)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를 국회의원 진성 준입니다.

오늘 '항공 기내보안 혁신을 위한 역량강화방안'을 주제로 진행되는 『2023년 항공보안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행사를 준비해주신 한국항공보안학회 황호원 회장님을 비롯한 한국항공보안학회 회원여러분과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국제선 운항이 중단·감편되면서 항공업이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만, 다행이도 최근 국제선 운항이 코로나 이전 약 70% 수준까지 회복되었고, 9월이면 90%선까지 회복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지난 25일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항공우주 산업화 시대'의 개막을 열었습니다. 항공운송뿐만 아니라 전투기, 발사체, 인공위성 그리고 다가올 UAM 산업까지 새로운 미래먹거리로 항공우주산업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변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학회의 역할도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국회에서도 항공우주산업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다만, 항공보안 사고는 아무리 작은 실수라도 승객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항공산업 전체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과보안 분야는 여전히 항공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영역입니다.

따라서 항공보안에 대한 국내·외 최신동향을 연구하여 전파하는 학회의 활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학술대회가 ▲항공기 보안강화를 위한 제도적, 운영적 개선방안, ▲기내 불법방해행위 대응을 위한 항공객실승무원의 교육훈련 강화방안, ▲기내 불법방해행위에 관한 기장의 권한, ▲장재적 사이버위협에 대한 기내보안 역량 강화방안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혔어도 좌절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수준 높은 학술지를 펴내는 한국항공보안학회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만, 위대한 역사는 첫걸음을 떼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되새기며 연구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항공산업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항공보안학회의 『2023년 춘계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
진 성 준 의원



주제발표 1

항공기 보안강화를 위한 제도적, 운영적 개선 방안

김용욱 상무(대한항공 항공안전보안실)

박관홍 팀장(대한항공 항공보안팀)



항공기 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적, 운영적 개선 방안

2023.06.09

대한항공
항공안전보안실

KOREAN AIR

Contents

**SECURITY IS
EVERYONE'S
RESPONSIBILITY**

1. 대한항공의 항공기 보안 활동
2. 기내 보안 점검 및 위해물품 관련 개선 조치 사항
3. 항공기 보안 실효성을 위한 개선 방안
4. 향후 계획

KOREAN AIR

2. 기내 보안 점검 및 위해물품 관련 최근 개선 조치 사항

2-1. 동영상 Contents 신규 제작을 통해 위해물품 식별 능력 제고 및 발견 시 처리 절차 숙지

[주요 Contents]

➔ 기내 보안점검 시 발생 가능한 주요 사례별 지침 구성

- 커터칼 및 유사 칼 종류
- 실탄 사진 및 구성 요소 (탄두, 탄피)
- 수류탄, 폭죽, 조명탄, 연막탄 등 위해물품 사진 자료
- 새총, 활, 화살, 석궁, 표창 등 위해물품 사진 자료
- 사제 폭발물 구성 요소와 예시
(장난감 트럭, 담배, 음료수 캔 등)
- 폭발물 탐지 시 절차 : 시각, 청각, 후각 모두 사용
- '항공보안 365' 사이트 검색 방법 등



KOREAN AIR

2. 기내 보안 점검 및 위해물품 관련 최근 개선 조치 사항

2-1. 동영상 Contents 신규 제작을 통해 위해물품 식별 능력 제고 및 발견 시 처리 절차 숙지



KOREAN AIR

2. 기내 보안 점검 및 위해물품 관련 최근 개선 조치 사항

2-1. 동영상 Contents 신규 제작을 통해 위해물품 식별 능력 제고 및 발견 시 처리 절차 숙지



KOREAN AIR

2. 기내 보안 점검 및 위해물품 관련 최근 개선 조치 사항

2-2. 실탄을 포함한 주요 위해물품에 대한 모형 확보, 객실훈련센터 내 상시 비치 및 교육 실시



KOREAN AIR

2. 기내 보안 점검 및 위해물품 관련 최근 개선 조치 사항

2-5. 폭파 위협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능력 제고

- 당사는 연 1회 전사 폭파위협 훈련을 실시 중이나, 23년부터 국내공항 지점 대상 별도 폭파 위협 훈련 (불시 평가) 추가 실시 중
 - 전 지점별(여객/화물) 연 1회 이상 불시 훈련 실시 (해외 공항지점 확대 시행 검토)
 - 기존 시나리오를 다양화하여 대응 능력 제고 (예 : 아이폰 에어드랍 위협 메시지 전송 등)
- 2023년 하반기 전사 폭파위협 훈련 시 수검 대상 확대 실시 계획
 - 기존 : 국내외 여객/화물 지점
 - 변경 : 국내외 여객/화물 지점, **통제센터, 정비, 기내식**



2. 기내 보안 점검 및 위해물품 관련 최근 개선 조치 사항

2-6. 승무원의 전자충격기(테이저) 격발 실습 확대 운영

- 항공기내보안요원 전자충격기 격발 실습 확대 운영 현황

구분	전체 인원	실제 카트리지 이용 격발 실습 인원	비고
2022년	1,999명	9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인원은 모의 카트리지 격발 실습 중 • 신규 임명자 포함 일부 인원만 실제 카트리지 이용 격발 실습
2023년	2,333명	40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의 카트리지 격발 실습(1,927명) + 전 신규 임명 항공기 기내보안요원 대상 훈련용 카트리지(비 충격식) 이용 격발 실습 (23.5.25 부 확대 시행 / 훈련용 카트리지 253명분 구매) • 훈련용 카트리지는 탐침이 포함되어 있으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전류 미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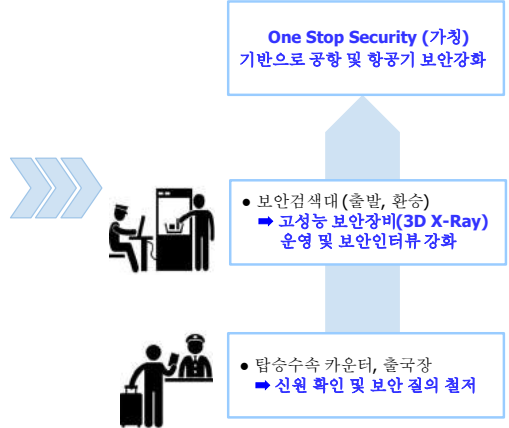


3. 항공기 보안 실효성을 위한 개선 방안

3-1. 미국행 승객 보안인터뷰 및 2차 검색 폐지/간소화 운영

- Covid 19 前, 당사 미국행 연간 승객 규모는 약 150만명 이나 보안 인터뷰/2차 검색에 의한 미국행 승객 탑승 거절 사례는 없어 운영 비용(연간 약 52억) 대비 보안 실효성 검토 필요
- 2019년 12월, 한-미 보안상호인정 후 현재 규정 검토를 포함 진행 중이나 우선 추진 필요
 - ➔ 공항의 첨단 보안검색장비(3D X-Ray 등) 확대 운영 및 행동탐지요원에 의한 통합적인 미국행 승객 보안 인터뷰/2차 검색 수행 방안 등 검토

※ 항공사-공항운영자 이원화 운영이 아닌 공항운영자 첨단 보안 장비 구축, 보안검색대 승객 행동 탐지 등 통합 보안을 통한 실효성 극대화



13

KOREAN AIR

3. 항공기 보안 실효성을 위한 개선 방안

3-2. 미국행 승객 2차 검색 비용 보전

[항공보안법]

제15조(승객 등의 검색 등)

- ①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신체,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 ②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고, 항공운송사업자는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생략>

제34조(재정 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항공사는 공항운영자의 보안검색 실시와 별개로 미국행 **Selectee** 승객/휴대물품 대상 2차 검색 추가 실시 중

- 공항공사는 승객 보안검색 비용에 대해 공항이용료를 통해 별도 일부 보전 중 (항공사 : 없음)

* 국제선 (ICN, GMP 등) : 17,000원
국내선 : 4,000원 (ICN : 5,000원)

- 항공사의 미국행 승객 2차 보안검색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제도적) 도입 검토

14

KOREAN AIR

3. 항공기 보안 실효성을 위한 개선 방안

3-3. 항공사 기내 보안검색/교육 훈련 Contents 표준화 운영

구분	현행	개선 의견
기내 보안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사마다 점검 구역, 운영 방식 상이 • 점검 실시 여부 명기 운영 (Yes or N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 주관 항공기 보안점검 Checklist 양식 표준화 및 점검 구역별/보안 등급별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운영
교육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민간항공보안교육훈련지침 (국토부 고시)에서 정한 '교육 최소 포함 내용'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최소 포함 내용'에 대한 구체성, 중요도에 따른 표준 교육 Contents 검토

15

KOREAN AIR

3. 항공기 보안 실효성을 위한 개선 방안

3-4. 국가보안기관 주관 항공보안 Portal Site 구축 운영

구분	현행	개선 의견
국가 감독기관의 보안 점검 /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항공청 감독관마다 점검 Skill, 점검 결과 적용 (시정 조치, 개선 권고, 현장 시정 등) 기준 상이 • 보안사고/불법행위 발생 시 SMS 보고 대상 통보 방식 상이 (주기적 안내 또는 미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 이슈 외 필수 점검 항목에 대한 Best Practices 배포 • 보안사고/불법행위 발생 시 SMS 보고 대상 전용 포털사이트 도입 운영을 통해 실시간 업데이트 등 효율성 제고
위협 노선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사는 분쟁 지역 영공 통과 등 항로 검토 시 AIP, NOTAM 등 지침을 참고 중 • 이외 해당 국가의 정세, 대공 무기 보유 현황 등 자료는 국가정보원 의견 수렴 중이나 전세계 운항 또는 긴급 검토 시 적기 대응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적항공사 취항 국가의 정세, 대공 무기 보유 현황 및 테러 가능성 등 최신 위협 정보를 포털 사이트 운영을 통해 실시간 공유하여 안전운항 및 효율성 제고

16

KOREAN AIR

4. 향후 계획

항공사 자체 역량 강화

- 직관적인 관계기관 보고 절차 지속 강조
- 위해물품 실물 확보 등 교보재 투자를 통한 실습 훈련 강화
- 동영상 Contents 활용 등 교육 내실화 지속 추진



폭파 위협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관계기관 보고 등 직원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사내 부문별 유관 부서와 협업 및 현장 절차 이행 여부 **지속 모니터링** 실시 예정

제도적/운영적 개선 방안

- 미국행 승객 보안인터뷰 및 2차 검색 폐지/간소화 운영
- 미국행 승객 2차 검색 소요 비용 보전
- 항공사 기내 보안검색/교육 훈련 Contents 등 표준화 운영
- 국가 보안기관 주관 항공보안 Portal Site 구축 운영



국가 보안기관, 항공사, 공항운영자와 공감대 형성, 국가 보안기관과 면밀한 검토, 이해 당사자간 지속적, **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

KOREAN AIR

끝.

KOREAN AIR

Q & A

 **KOREAN AIR**



주제발표 2

기내불법방해행위 대응을 위한 항공객실승무원의 교육훈련 강화 방안

박수진 교수(인하공전)



기내불법방해행위 대응을 위한 항공객실승무원의 교육·훈련 강화 방안

한국항공보안학회 2023년 춘계학술대회

인하공업전문대학 박수진교수

©Shutterstock

목차

- 01 서론
- 02 현행
- 03 개선방안
- 04 결론

2

01 서론

▣ 연구배경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 「항공보안법」 제14조 제2항

01 서론

▣ 검토사항



적절한 교육·훈련이 진행되고 있는지



01 서론

▣ 연구범위

- 항공보안법 제23조 (승객의 협조의무)에 해당하는 기내불법방해행위 관련 내용
- 객실승무원의 항공보안 교육·훈련

조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 의무)
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2. 흡연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4.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5. 항공안전법 제 73조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7.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방해 하는 행위

01 서론

▣ 문제점

기내불법방해행위 대응 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내불법방해행위의 효과적 대응 불가

기내 보안 확보 불가

01 서론

▣ 문제점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처벌 불가

- 증거부족으로 무죄선고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고단282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19노420 판결]
- 현행법 체포시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등 형사소송법 제72조에 규정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처벌 불가한 사례
[대전지방법원 2006. 10. 10. 선고 2006노1219 판결]

▶ 과잉대응 등으로 인한 법적 문제, 인권침해 등의 문제 야기

- 탑승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Eid v. Alaska Airlines, Inc., 621 F.3d 858 (9th Cir. 2010). 2003. 9. 23.]

02 현황

▣ 법규범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국토교통부예규 제338호,2021.12.16]

제1조(목적) : 항공보안법 제28조 제1항,제5항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10.2.6에따라 항공보안 업무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제3조(적용범위) : 제1항 ~교육훈련 대상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항공보안교관 및 사내보안교관
7. 항공기승무원

제4조(항공보안교육훈련 관련 국가정책 및 기본방침)
1. 항공보안 수준 표준화
2. 위협증가 시 신속한 보안 강화능력 배양
3. 최신 항공보안 변화에 대한 적극 대응
4. 위기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능력 함양
5. 국제적 수준에 맞는 항공보안 체제 유지
6. 현장적응력이 강한 전문 보안요원 양성
7. 항공관련 업무 수행자에 대한 보안 의식 함양

제22조(운항·객실승무원 및 탑승수속 담당직원)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에 대하여 별표10과 별표 10의2의 교육을 이수하도록하며,~

02 현황

법규범

[별표 10] 승무원 초기 보안교육(제22조 관련)

과 정 명	승무원 초기 보안교육과정
대 상	모든 운항 및 객실승무원
시 간	최소 8시간 이상
과정목표	승무원에 대한 보안의식 함양
교과요건	아래 요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항공사 보안관련 전문지식 소지자 2. ICAO 항공보안 기초 과정 이수자 3. 승무원 초기 보안교육 과정 이수자 4. IATA 항공보안과정 이수자 5. 항공보안 경력2년 이상이며 항공보안 전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교육 최소 포함내용
1. 개요 가. 항공보안 목적 및 항공보안 조직 임무 나. 국가 항공보안 관련 규정, 국제규정 및 항공사 보안시행계획 다. 공항보안 및 출입통제, 출입증 라. 항공보안 관련 위협 마. 항공보안 관련 승무원 임무
2. 항공기 보안 가. 운항전후 보안점검 나. 지상 항공기 보호 및 항공기 출입통제 다. 운항중 조종실 보안관련 정책 및 절차
3. 항공기 납치 가. 항공기 납치시 대응 및 인질 협상 기법 나. 항공기 납치관련 언론대응
4. 사보타지 가. 폭발물 위협대응 나. 항공기 수색절차 다. 비행중 및 거상비상절차 라. 사보타지 발생시 언론대응 마. 운항중 폭발물 발견시 처리절차 등
5. 잠재난봉자 행동 형태 인지 및 난봉시 대응 방법
6. 항공보안 인력요소

02 현황

법규범

[별표 10 외2] 승무원 정기 보안교육(제22조 관련)

과 정 명	승무원 정기 보안교육과정
대 상	승무원
시 간	연1회 최소 2시간 이상
과정목표	각주 수행 관련 새로운 보안관련 경보지식, 기술습득 및 승무원 자결향상
교과요건	아래 요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1. 항공사 보안관련 전문지식 소지자 2. ICAO 항공보안 기초 과정 이수자 3. 승무원 초기 보안교육 과정 이수자 4. IATA 항공보안과정 이수자 5. 항공보안 경력2년 이상이며 항공보안 전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교육 최소 포함내용
1. 보안절차 및 관련 규정 체계경정 사항
2. 국내외 항공보안 위협 현황
3. 최근 보안사고 사례분석
4. 조종실 보안
5. 항공기 납치, 사보타지 등 긴급상황시 대응절차
6. 공항 또는 항공사에서 실시하는 특별보안 조치
7. 항공보안 인력요소

02 현황

▣ 법규범

「항공보안법」 제1조, 제4조, 제10조 제1항에의거,

「국가항공보안계획」

7.6.1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 소속 항공기내보안요원의 자격 기준, 무기조작, 범인제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수립하여야 하고, 항공운송사업자는 이 지침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한 자체 세부 운영지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탑재 무기 선정 기준
- 2) 기내 무기 보관
- 3) 기내 무기 인계·인수
- 4) 기내 무기사용 등 불법방해행위 발생 시 위협수준별 대응기준
- 5) 항공기 내에서 「항공보안법」 등에서 규정한 불법방해행위를 범한 범인의 경찰관서예의 인도

02 현황

▣ 법규범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지침**

[국토교통부지침 제193호,2021.5.31.]

제1조(목적) : 항공보안법 제14조 제2항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7.6.1에 따라 ~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6조(교육훈련)

1. 항공기내 불법행위자에 대한 강력대응, 경찰인계 절차 및 구금기법
2. 비무장 공격 및 방어 기술
3. 관찰 및 감시
4. 탑재된 무기의 사용방법 등 무기훈련
5. 불법행위 유형별 대응절차 및 조치사항
6. 최소폭발물위험위치 인지, 승무원의 임무와 책임, 항공기 성능 및 객실장비 등 일반적 교육

제6조의2(교육과정 운영등)

제2항 초기교육은 실습훈련을 포함하여 최소 8시간 이상으로 운영하고, 초기교육을 받은 사람과 일반 객실승무원은 매 12개월마다 2시간 이상의 실습훈련을 포함한 최소 3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02 현황

▣ 객실승무원의 법적지위

비교	항공기내보안요원	특별사법경찰리
지 위	객실승무원 중 임명	모든 객실승무원
권 한	기내보안, 일반경찰 (범죄의 예방)	특별사법경찰 (수사, 증거수집 등)
지위의 발생	지방항공청장의 지정	법률에 따라 인정
탑승정원	최소 1명 이상	탑승인원
주요 임무	항공기 테러방지, 기내보안업무 수행	특별사법경찰리의 업무

02 현황

▣ 객실승무원의 직무

구분	항공기 내 보안요원	특별 사법경찰리
직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객실 내 보안 점검 및 수색 승객과 불법점거 또는 파괴행위 제지 최소위험폭발물위치 사용 절차에 따른 수행 불법행위 발생 시, 녹화 실시 및 도착 공항 경찰관서에 인도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 보안에 필요한 사항 휴대수하물에 대한 수색 및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사법경찰관은 법에 의한 직무의 범위 안에서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 특별사법경찰리는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
직무 범위	<p>기내보안요원 임무 시작</p> <p>특별사법경찰리 임무 수행</p> <p>승객탑승시작 전 (범죄의 예방)</p> <p>범죄발생 (범죄의 진압 및 제지)</p> <p>항공기 도착 후 (모든 문이 열릴 때까지)</p> <p>모든 승객 하기 후까지</p>	

02 현황

▣ 항공사 교육현황

객실승무원 보안교육훈련

구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신입 (초기)	1일(8시간)	1일(8시간)	1일(8시간)	1일(9시간)	1일(8시간)
정기 (기성)	연1회 3시간 (실습2+이론1)	연1회 3시간 (실습2+이론1)	연1회 3시간 (실습2+이론1)	연1회 3시간 (실습2+이론1)	연1회 3시간 (실습2+이론1)
무기	테이저	테이저 가스총	테이저	테이저	테이저

02 현황

▣ 항공사 교육현황

항공기내 보안요원

항공기내 보안요원 초기교육훈련		항공기내보안요원 정기교육훈련	
구분	과목명	구분	과목명
온라인(4h)	국제 테러 정세 및 국가 대 테러 활동 체계	집체실습(3hr)	무기훈련(Air Taser)
	항공기 성능 및 객실 장비		비무장 방어기술
	관찰 및 감시 기법		체포 및 구금기법
	최소 폭발물 위치 인지 및 상황전달 방법		
집체실습(4h)	무기훈련(Air Taser)		
	비무장 방어기술		
	체포 및 구금기법		

FSC 항공사 교육내용 2019

FSC 항공사 교육내용 2019

02 현황

▣ 법무연수원 특별사법경찰 수사 실무 기초과정

교과목 및 시간(h)		계(h)
수사실무	특사경제도 개관(1), 형사절차 개관(2), 형사소송법의 이해(2), 형법의 이해(2), 수사실무(12), 특사경 수사보완(2), 인권과 수사(2), 디지털포렌식의 이해(2), 통신수사(1), 조사자 법정증언기법(2), 수사실무실습(3), 특사경 수사사례(2)	33
행정기타	설문조사 및 수료신고(1)	1
총 12과목		34

출처 : 법무연수원 내부자료(2023).

03 개선방안

▣ 항공사 교육훈련

항공보안 의식 함양 교육

교육훈련 내용의 표준화

특별사법경찰로서의
수사실무교육

시나리오 및 팀워크 기반 평가

항공보안교육훈련 시간 확대

전문교육 도입

참고자료

- 박수진, “항공기내 보안제도 개선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항공대학교 박사논문(2020)
- 박수진, “기내불법방해행위의 증거물에 관한 항공객실승무원의 증명력 확보를 위한 방안연구”, 한국항공경영학회지(2022)
- 박수진, 윤영훈, 황호원, “항공기내 불법방해행위 대응조치에 관한 법적연구- 객실승무원의 수사절차를 중심으로-”, 한국항공경영학회지(2019)
- 김종오, 김태진, “특별사법경찰의 교육훈련 효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0권 제3호, 한국공안행정학회(2011).
- 구세주, “NARS 현안분석 항공기 내 불법행위 현황 및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제109호 (2019.12.31.).
- 형사소송법[법률 제16850호]
- 항공보안법[법률 제14954호]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413호]
-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지침[국토교통부지침 제22호]
-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국토교통부예규 제151호]
-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법무부령 제917호]
- 대전지방법원 2006. 10. 10. 선고 2006노1219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고단2826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19노420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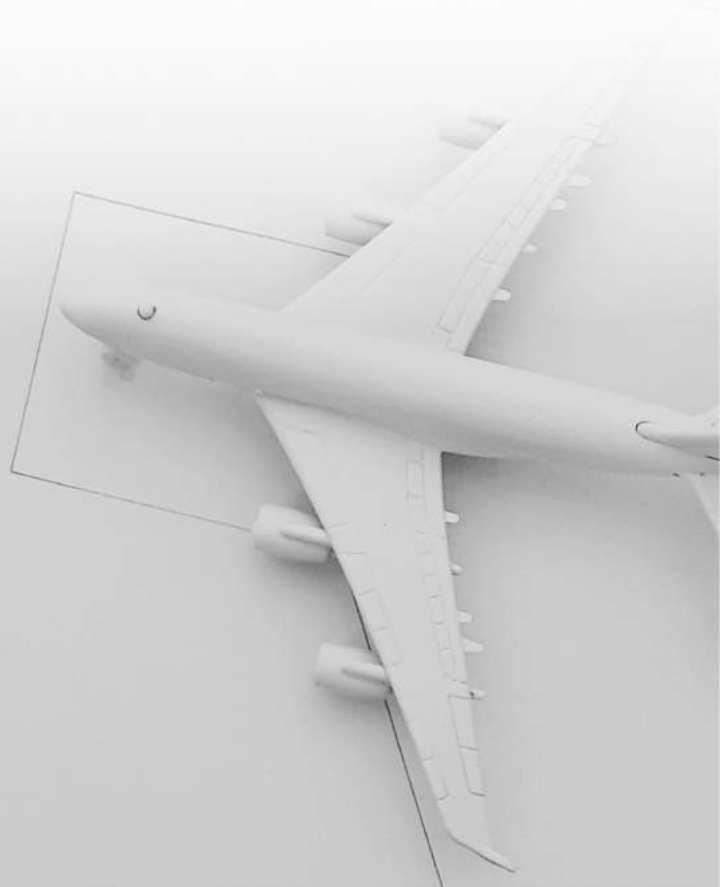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주제발표 3

기내 불법방해행위에 관한 기장의 권한

안희복 기장(한국항공대학교 박사과정)



기내 불법방해행위에 대한 기장의 권한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전공 박사과정 안희복

1. 기내 불법방해행위 정의

2. 기장의 권한에 관한 현행 법 및 국제 협약

3. 기내 불법방해행위 발생시의 기장의 권한 한계

4. 기장의 권한 강화 개선 방향

1. 기내 불법방해행위 정의

- ❖ 항공보안법
- ❖ ICAO
- ❖ 국내 A 항공사 운송약관
- ❖ IATA 및 기타 정의
- ❖ FAA(벌칙)
- ❖ 항공범죄에 관한 국제 협약



불법행위승객 발생현황(ATA)

- √ 영국 민간항공청, 미국연방항공청, 유럽항공안전청 등의 통계에 따르면, 불법행위 승객의 빈도와 심각도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장기적인 추세로 분석
- √ 2020년부터 매 1000 비행편당 발생율은 증가추세이며, 더 큰 문제는 6%의 사례가 신체적 폭력행위, 12.6%가 언어적 폭력행위임

Unruly Passenger Incident Reports – January 2020 to June 2022



항공보안법 제 2조

8. “**불법방해행위**”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지상에 있거나 운항중인 항공기를 납치하거나 납치를 시도하는 행위(제40조 항공기 납치죄 등)

나. **항공기 또는 공항에서 사람을 인질로 삼는 행위**

다. 항공기,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법 제39조 항공기 파손죄등, 법 제41조 항공시설 파손죄)

라. 항공기, 항행안전시설 및 제12조에 따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무단 침입하거나 운항을 방해하는 행위(법 45조 공항운영 방해죄, 벌칙 제50조 제9항)

마. **범죄의 목적으로** 항공기 또는 보호구역 내로 제21조에 따른 무기 등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행위(법 제44조 항공기 위험물건 탑재죄)

바. 지상에 있거나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공항 및 공항시설 내에 있는 승객, 승무원, 지상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법 제48조 운항 방해정보 제공죄)

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법 제40조 항공기 납치죄등)

아.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처벌받는 행위(법 제42조 항공기 항로변경죄, 제43조 직무집행방해죄, 제46조 항공기 내 폭행죄 등, 제47조 항공기 점거 및 농성죄, 벌칙 제49조~제51조)

항공보안법 제 23조 승객의 협조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벌칙 제50조 제3항 제2호, 제50조 제6항 제1호)

2. 흡연(벌칙 제50조 제7항 제1호, 제8항 제1호)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벌칙 제50조제3항 제3호, 제6항 제2호)

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벌칙 제50조 제7항 제2호, 제8항 제2호)

5. 「항공안전법」 제73조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벌칙 제50조 제7항 제3호, 제8항 제3호)

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벌칙 제49조 제2항 제1호)

7. 기장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벌칙 제49조 제1항)

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46조 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③ 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농성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47조 항공기 점거 및 농성죄)

④ 항공기 내의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벌칙 제49조 제2항 제2호)

ICAO Annex 17 보안

Safeguarding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gainst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불법 간섭(방해) 행위)로부터 국제 민간 항공 보호, 11TH Edition, Mar 2020)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These are acts or attempted acts such as to jeopardize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 unlawful seizure of aircraft.(법 제40조 항공기 납치죄등)
- destruction of an aircraft in service.(법 제39조 항공기 파손죄)
- hostage-taking on board aircraft or on aerodromes,? **항공기내 또는 공항에서 인질?**
- forcible intrusion on board an aircraft, at an airport or on the premises of an aeronautical facility,(법 제50조 제9항)
- introduction on board an aircraft or at an airport of a weapon or hazardous device or material intended for criminal purposes,(법 제44조 항공기 위험물건 탑재죄)
- use of an aircraft in service for the purpose of causing death, serious bodily injury, or serious damage to property or the environment.(법 제39조 항공기 파손죄, 제40조 항공기납치죄, 제41조 항공시설 파손죄)
- communication of false information such as to jeopardize the safety of an aircraft in flight or on the ground, of passengers, crew, ground personnel or the general public, at an airport or on the premises of a civil aviation facility.(법 제45조 공항운영 방해죄)

국내 A항공사 여객운송약관

기내에서의 행위 = 기내업무 방해행위= **승객의 협조의무(항공보안법 제23조)**

가. 항공기 내에 있는 여객은 항공기와 여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A항공은 여객이 항공기 내에서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신체 억류를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당해 여객은 운항 중 하기 조치되거나 이후 운송이 거절될 수 있으며, 항공기 내에서의 행위로 인하여 고소될 수 있다.

- 항공기, 탑승 인원 또는 탑재된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 흡연, 음주, 약물 복용, 고성방가 등 제반 행위
- 여객 또는 승무원의 불안, 불편, 손해 또는 부상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 항공안전법을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 기장 등의 정당한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나. 위의 "가"호에 언급한 행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당해 여객이 책임을 부담한다.

기타정의

기내 난동(Air Rage)은 항공기 승객이 항공기 운항 시 지켜야 할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기장 및 객실승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이들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항공기 내에서의 승객의 소란 및 난동을 말한다.(김송주, 항공기내 난동의 법적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3)

기내업무 방해행위(Interference with flight crew's duty) 함은 항공기내에서의 타인의 신체 및 항공기를 포함한 기물에 대한 공격행위, 폭행, 협박, 위협, 폭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승무원의 정당한 기내 업무를 방해하여 항공기내에서의 질서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전방언, 항공기내업무 방해행위에 대한 법적고찰, 한국항공대학교 석사학위, 2009)

IATA unruly/disruptive" behaviors

- √ 마약의 불법적인 소비
- √ 안전 지침 준수 거부(안전 벨트 착용, 흡연 금지, 휴대용 전자 장치 끄기 등의 요청 장치 또는 안전 공지사항 방해, 승무원을 따르지 않는 경우 포함)
- √ 승무원 또는 다른 승객과의 언어적 대립
- √ 승무원 또는 다른 승객과의 물리적 충돌
- √ 비협조적인 승객(승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것, 탑승 또는 하차 지시를 거부 등)
- √ 위협(사람에게 향하는 협박, 예를 들어 승객 및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협박적인 행동을 포함)
- √ 성희롱/성희롱
- √ 다른 유형의 난폭한 행동. (예: 비명, 짜증나는 행동, 발차기 등)

49 U.S. Code § 46504 Interference with flight crew members and attendants

An individual on an aircraft in the special aircraft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who, by assaulting or intimidating a flight crew member or flight attendant of the aircraft, interferes with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of the member or attendant or lessens the ability of the member or attendant to perform those duties, or attempts or conspires to do such an act, shall be **fin**ed under title 18, **imprisoned for not more than 20 years, or both**. However, if a **dangerous weapon is used** in assaulting or intimidating the member or attendant, the individual shall **be imprisoned for any term of years or for life**.

미국의 특별 항공기 관할권에 있는 항공기에 탑승한 개인이 해당 항공기의 승무원 또는 승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해당 항공기의 승무원 또는 승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그 직무수행능력을 저하시킨 자, 또는 그러한 행위를 시도하거나 공모하거나, 제18조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거나,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합니다**. 단, 승객 또는 승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때 위험한 무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징역 1년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항공범죄에 관한 국제협약 (항공보안법 제3조 제1항)

- ① 항공기 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 "도쿄협약") : 협약은 1963. 9. 14. 도쿄, 1969. 12. 4. 발효, 2023. 6. 현재 187개국 가입, 한국(1971. 5. 20.)
i) 항공기와 기내의 인명 및 재산의 안전의 보호, ii) 기내의 질서와 규율의 유지
- ②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 "헤이그 협약") : 협약은 1970. 12. 6. 헤이그, 1971. 10. 14. 발효, 2023. 6. 현재 185개국 가입, 한국(1973. 1. 18.)
- ③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 "몬트리올협약") : 협약은 1971. 9. 23. 몬트리올, 1973. 1. 23. 발효, 2023. 6. 현재 188개국 가입, 한국(1973. 8. 2.)
- ④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Protocol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of Violence at Airports Serving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Supplementary to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 : "몬트리올협약 보충의정서") : 협약은 1988.2.24. 몬트리올, 1989. 8. 6. 발효, 2023. 6. 현재 176개국 가입, 한국(1990. 7. 27.)
- ⑤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Marking of Plastic Explosives for the Purpose of Detection) : 협약은 1991. 1. 몬트리올, 1998. 6. 21. 발효, 2023. 6. 현재 156개국 가입, 한국(2002. 3. 3.)

✓ 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 외에 항공보안에 관련된 다른 국제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약에 따른다.

도쿄협약을 보완하여 재판 관할권을 확대하고 기내 불법행위 정의 및 처벌을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하 "몬트리올 의정서 2014")에서 각 체약국은 기내에서 승무원에 대한 신체적 폭행 또는 그러한 폭행을 가하겠다는 협박, 항공기 또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나 재산의 안전을 보호할 목적으로 항공기 기장이 제공하는 합법적인 지침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등 범죄 또는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적절한 형사적, 행정적 또는 기타 형태의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국은 미가입)

2.기장의 권한에 관한 현행법 및 국제 협약

- ❖ 항공안전법/항공보안법
-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사법경찰직무법")
- ❖ 형사소송법
- ❖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도쿄협약)
- ❖ ICAO
- ❖ FAA

항공기운항안전법 제 5조 (기장등의 권한)

[시행 1974. 12. 26.] [법률 제2742호, 1974. 12. 26., 제정]

① 기장은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치고, 인명·재산에 위해를 주며, 기내의 질서를 문란시키거나 기내의 규율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저지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항공기내에 있는 자는 제1항의 조치에 관하여 기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협조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02. 7. 27.] [법률 제6644호, 2002. 1. 26., 일부개정]

① 기장 및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이하 "기장등"이라 한다)은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치고, 인명재산에 위해를 주며, 기내의 질서를 문란시키거나 기내의 규율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저지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항공기내에 있는 자는 제1항의 조치에 관하여 기장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이 제1항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기장의 지휘를 받아 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2. 1. 26.>

항공보안법 제 22조 제1항 (기장등의 권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전문개정 2010.3.22)이후 2014년 4월 6일부터
항공보안법으로 법률명 개정 시행

- ① 기장이나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이하 "기장등"이라 한다) 또는 승객의 항공기 탑승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항공운송사업자 소속 직원 중 기장의 지원요청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항공기의 보안을 해치는 행위
 2. 인명이나 재산에 위해를 주는 행위
 3. 항공기 내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 ② 항공기 내에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기장등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④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 또는 승객의 항공기 탑승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항공운송사업자 소속 직원 중 기장의 지원요청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기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항공안전법 제 62조 (기장의 권한 등)

- ① 항공기의 운항 안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이하 "기장"이라 한다)은 그 항공기의 승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기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준비가 끝난 것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항공기를 출발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③ 기장은 항공기나 여객에 위난(危難)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항공기에 있는 **여객에게 피난방법과 그 밖에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④ 기장은 운항 중 그 항공기에 위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객을 구조하고, 지상 또는 수상(水上)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위난 방지에 필요한 수단을 마련하여야 하며, 여객과 그 밖에 항공기에 있는 사람을 그 항공기에서 나가게 한 후가 아니면 항공기를 떠나서는 **아니 된다**.

사법경찰직무법 제 7조 2항 (선장과 해원 등)

- ① 해선[연해항로 이상의 항로를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톤 이상 또는 적석 수 2백 석 이상의 것]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선장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사무장 또는 갑판부, 기관부, 사무부의 해원 중 선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② **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이 제1항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형사소송법 제 197조 (사법경찰관리)

-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245조 10 (특별사법경찰관리)

-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행위에 관한 협약(동경협약) 제3장 제5조 ~ 제10조

제5조

2. 제1조제3항에 관계없이 본 장의 적용상 항공기는 승객의 탑승 이후 외부로 통하는 모든 문이 폐쇄된 순간부터 승객이 내리기 위하여 상기 문들이 개방되는 순간까지를 비행 중인 것으로 간주한다. 불시착의 경우에는 본 장의 규정은 당해국의 관계 당국이 항공기 및 기내의 탑승자와 재산에 대한 책임을 인수할 때까지 기내에서 범하여진 범죄와 행위에 관하여 계속 적용된다.

제1조(협약의 범위)

1. 본 협약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용된다.
 - (a) 형사법에 위반하는 범죄
 - (b) 범죄의 구성여부를 불문하고 항공기와 기내의 인명 및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거나 하는 행위 또는 기내의 질서 및 규율을 위협하는 행위
3. 본 협약의 적용상 항공기는 이륙의 목적을 위하여 시동이 된 순간부터 착륙 활주가 끝난 순간까지를 비행 중인 것으로 간주한다.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행위에 관한 협약(동경협약) 제3장 제5조 ~ 제10조

제6조

1. 항공기 기장은 항공기내에서 어떤 자가 제1조제1항에 규정된 범죄나 행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한다는 것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다음을 위하여 요구되는 감금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 (a) 항공기와 기내의 인명 및 재산의 안전의 보호
 - (b) 기내의 질서와 규율의 유지
 - (c)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상기 자를 관계당국에 인도하거나 또는 항공기에서 하기조치(disembarkation)를 취할 수 있는 기장의 권한 확보
2. 항공기 기장은 자기가 감금할 권한이 있는 자를 감금하기 위하여 다른 승무원의 원조를 요구하거나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승객의 원조를 요청하거나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나 이를 요구할 수는 없다. 승무원이나 승객도 누구를 막론하고 항공기와 기내의 인명 및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장의 권한부여가 없어도 즉각적으로 상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및 기타행위에 관한 협약(동경협약) 제3장 제5조 ~ 제10조

제7조

1. 제6조에 따라서 특정인에게 가하여진 **감금조치**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기가 착륙하는 지점을 넘어서까지 계속되어서는 아니된다.
 - (a) 착륙지점이 비체약국의 영토내에 있으며, 동 국가의 당국이 상기 특정인의 상륙을 불허하거나, 제6조제1항(c)에 따라서 관계당국에 대한 동인의 인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조치가 취하여진 경우,
 - (b) 항공기가 불시착하여 기장이 상기 특정인을 관계당국에 인도할 수 없는 경우,
 - (c) 동 특정인이 감금 상태하에서 계속 비행에 동의하는 경우.
2. **항공기 기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내에 특정인을 감금한 채로 착륙하는 경우 가급적 조속히 그리고 가능하면 착륙이전에 **기내에 특정인이 감금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 사유를 당해국의 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1. **항공기 기장은** 제6조제1항의 (a) 또는 (b)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내에서 제1조 제1항(b)의 행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한다는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누구임을 막론하고 항공기가 착륙하는 국가의 영토에 **그 자를 하기 시킬** 수 있다.
2. **항공기 기장은** 본 조에 따라서 특정인을 하기 시킨 국가의 당국에 대하여 특정인을 **하기 시킨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및 기타행위에 관한 협약(동경협약) 제3장 제5조 ~ 제10조

제9조

1. 항공기 기장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항공기의 등록국의 형사법에 규정된 중대한 범죄를 기내에서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누구임을 막론하고 항공기가 착륙하는 영토국인 체약국의 관계당국에 그 자를 인도할 수 있다.
2. 항공기 기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인도하려고 하는 자를 탑승 시킨 채로 착륙하는 경우 가급적 조속히 그리고 가능하면 착륙이전에 동 특정인을 인도하겠다는 의도와 그 사유를 동 체약국의 관계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3. 항공기 기장은 본 조의 규정에 따라 범죄인 혐의자를 인수하는 당국에게 항공기 등록국의 법률에 따라 **기장이 합법적으로 소지하는 증거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본 협약에 따라서 제기되는 소송에 있어서 **항공기 기장이나 기타 승무원, 승객, 항공기의 소유자나 운항자**는 물론 비행의 이용자는 피소된 자가 받은 처우로 인하여 어떠한 **소송상의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ICAO Annex 2 Rules of the Air

"The pilot-in-command of an aircraft shall have final authority as to the disposition of the aircraft while in command."

"항공기 기장은 지휘하는 동안 항공기의 처분에 관한 최종 권한을 가집니다."

ICAO Annex 17 Security

항공기 기장의 권한에 대한 언급 없음

FAA 14 CFR 1.1

Pilot in command means the person who: (1) Has final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for the operation and safety of the flight;

기장은 (1) 비행의 운항 및 안전에 대한 최종 권한과 책임이 있다.

3. 기내 불법방해행위 발생시 기장의 권한 한계

- ❖ 기장의 지휘·감독권
- ❖ 기장의 명령권
- ❖ 기장의 사법경찰직무권
- ❖ 기장과 항공기내보안요원의 관계

기장의 지휘·감독권

- √ 항공보안법 제22조 제1항에서 기장이나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 또는 승객의 항공기 탑승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항공운송사업자 소속 직원 중 기장의 지원 요청을 받은 사람은 불법방해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임·조치권 부여

→ 기내 불법방해행위시 실질적인 지휘 및 감독 불가

❖ 조종실 출입에 관련한 국내 법규

- √ 항공보안법 제14조(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실 출입문의 보안을 강화하고 운항중에는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실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항공기에 대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7조 (항공기 보안조치)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여객기의 보안강화 등을 위하여 조종실 출입문에 다음 각 호의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조종실 출입통제 절차를 마련할 것
 2. 객실에서 조종실 출입문을 임의로 열 수 없는 견고한 잠금 장치를 설치할 것
 3. 조종실 출입문 열쇠 보관방법을 정할 것
 4. 운항중에는 조종실 출입문을 잠글 것

❖ 조종실 출입에 관련한 국내 법규(계속)

- √ 운항기술기준 8.4.3.1 조종실 출입문의 잠금
항공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승객을 태우고 운항하는 동안 조종실 출입문을 항상 잠귀야 한다.
- √ 운항기술기준 9.1.20 보안관리
라. 운항증명소지자는 조종실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조종실 출입통제 대책 수립
 - 3) 조종실 출입이 공식적으로 허용된 자의 출입 시를 제외하고 승객 탑승 전부터 승객이 모두 하기 한 후까지 조종실 출입문 시건 조치

❖ A 항공사 운항중 불법방해 대응 절차

- √ 승객의 불법방해행위가 관련 문제로 조종실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 √ 항공기 내에서 기장 등의 업무방해 행위가 예상될 때에는 기내 청정구역(Clear zone)을 선포. 만약, 기내 청정구역이 선포되면 조종실 보호를 위하여 누구의 출입도 통제하여야 한다.

기장의 명령권

- √ 항공안전법 제62조 제3항에서 항공기나 여객에 위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항공기에 있는 여객에게 피난 방법과 그 밖에 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 반면, 항공보안법 제23조 제4항에서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제6항에서 기장등은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중지하게 하거나 하지 말 것을 경고하여 사전에 방지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승객의 협조의무에 관한 불법행위시 경미한 수준의 명령권 부여

기장의 사법경찰직무권

- √ 기장의 사법경찰직무권 :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의거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며, 제2항에서는 사법경찰리는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 √ 기장이 조종실 외부로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장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행 법률상 기장의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할 수 없는 구조임.
- √ 사법경찰직무권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및 훈련을 받지 않은 기장의 사법경찰 직무는 현행 법상 직무집행의 정당성 문제 발생

➔ 기장의 사법경찰관 직무 수행에 있어 실효성, 전문성 부재

기장과 항공기내보안요원의 권한 관계

√ 항공보안법

제2조(정의)

7. “항공기내보안요원”이란 항공기 내의 불법방해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그 직무를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4조(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항공기내보안요원을 탑승시켜야 한다.

제21조(위해물품 휴대 금지 및 검색시스템 구축·운영)

④ 제3항에 따라 항공기에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려는 사람은 탑승 전에 이를 해당 항공기의 기장에게 보관하게 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반환받아야 한다. 다만, 제14조 제2항에 따라 항공기 내에 탑승한 항공기내보안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과태료)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내보안요원을 탑승시키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

기장과 항공기내보안요원의 관계

√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지침 (국토교통부지침 제193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14조제2항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7.6.1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테러 등 불법행위로부터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탑승시키고 있는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5. “항공기내보안요원”이란 항공기 내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그 직무를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하며,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이란 항공기내보안요원과 일반 객실승무원을 말한다.

6. “항공기내의 불법행위”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항공보안법 제2조제8항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항공보안법 제23조 승객의 협조 의무?)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지침 (국토교통부지침 제193호)

제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책무)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내보안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승객 탑승 전 항공기 객실 내 보안 점검 및 수색
2. 최초 출발공항 또는 중간 경유지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 또는 재 탑승하는 승객과 휴대 수하물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경우 수색 및 점검
3. 운항 중 항공기 객실 내 보안 순찰
4. 운항 중 및 경유지에 있는 동안의 객실 내 보안감독
5. 항공기 불법 점거 또는 파괴 행위 제지
6. 객실 내 폭발 의심물체가 발견된 경우 최소 위험폭발물위치 사용절차에 따른 수행
7. 불법행위 발생 시 녹화 실시 및 불법행위 승객 도착공항 경찰관서에 인도
8. 기타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 보안에 필요한 사항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지침 (국토교통부지침 제193호)

제4조(항공기내보안요원의 권한 및 책임) **기장의 권한과 차이?**

- ② 항공기내보안요원은 제3조제3항에 따라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항공기내보안요원을 포함한 일반 객실승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의 직무도 수행하여야** 한다.
- ③ 항공기내보안요원(일반 객실승무원 포함)은 객실 내 불법행위 및 항공안전을 해치는 범죄행위 등을 녹화할 수 있으며, 그 행위를 저지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항공기내보안요원은 항공기 내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일반 객실승무원에게 임무를 부여하여야 하며, 항공기 내 주변 승객에게 협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⑥ 항공기내보안요원은 항공기내에서 불법행위를 행한 자 및 항공안전을 해치는 범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물리적으로 신체를 숙박한 경우에 해당)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기내보안요원은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 피 체포자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지침(국토교통부지침 제193호)

제8조(불법행위 대응 및 처리절차 등) 기장의 권한?

- ① 항공기 내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항공기내보안요원 및 일반 객실승무원**은 휴대전화 등을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녹화하여야 한다.
- ② **항공기내보안요원 및 일반 객실승무원**은 폭행행위, 조종실 진입 기도행위, 출입문. 탈출구.기기 등의 조작행위와 기내 안전을 위협하는 ~~~ 위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범한 승객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압 및 구금 조치하여야 한다.
- ③ **항공기내보안요원 및 일반 객실승무원**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흡연행위, 단순 소란행위,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은 행위 등 불법행위를 중단할 것을 경고할 ~~~ 항공기내보안요원의 판단에 따라 제2항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 ④ **기장 또는 항공기내보안요원**은 도착공항 경찰관서에 사전 협조를 요청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기 출입문 앞에서 불법행위 승객을 인계하여야 한다.
- ⑤ **기장 또는 항공기내보안요원**은 제4항에 따라 불법행위 승객을 도착공항 경찰관서에 인계하는 경우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참고인의 진술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으며, **항공기내보안요원 또는 승무원**은 도착공항 경찰관이 피해.목적내용에 대하여 추가 진술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서에 동행하여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4. 기장의 권한 강화 개선 방향

1. 항공기기와 선장의 권한 비교 분석

√ 해상안전법

제45조(선장의 권한 등)

- ① 누구든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선장은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46조의2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선박과 그 시설의 정비·수리, 선박운항일정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안전관리책임자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책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하거나 선박소유자가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선장이 선박소유자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가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선박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선박안전법

제31조(선장의 권한) 누구든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항공기기와 선장의 권한 비교 분석(계속)

- √ 기장과 선장은 항공기 및 선박의 질서를 유지하며 안전한 운항 및 위난을 방지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
- √ 항공기 기장은 조종실을 벗어날 수 없으나 선장은 선내를 자유로이 이동 가능
- √ 선장은 선원과 직접적인 대면 접촉이 가능하고 상황 발생시 현장 지휘 용이
- √ 기장은 유선상으로 상황파악을 하므로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하고 현실적인 지휘 불가능
- √ 항공기 기장과 선장의 권한은 법적으로 비슷해 보이나 선장의 경우,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항공기 기장의 권한은 미흡한 반면, 책임은 큼.

2.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

대법원 2001도3667 판결.

국가가 상당한수준의 **전문교육과 국가시험을 거쳐 간호사의 자격을 부여한 후** 이를 "의료인"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비추어볼 때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 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항공안전법 제2조

17. "객실승무원"이란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상시 승객을 탈출시키는 등 **승객의 안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지침

제5조(항공기내보안요원의 자격기준) 항공기내보안요원은 2년 이상의 선임 객실승무원 또는 객실승무원 경력을 갖춘 자로서 ~~~

제6조(항공기내보안요원의 교육훈련) 항공기내보안요원의 훈련프로그램에는 불법행위 유형별 위협수준에 따른 현실적 시나리오 및 훈련기법을 적용하여 실시~.

➡ **객실승무원 자격제도 도입(항공기내 안전 및 보안요원 인증)**

3. 기장의 권한 및 위임 규정 명확화

- 기장의 실질적 지휘에 관한 한계점 존재한 반면, 위임에 관한 책임소재 불명확
- 기내 불법방해행위 발생시 상황파악의 어려움, 적절한 지시권란, 그러나 책임은 기장에게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 존재
-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적 모순(조종실 이탈금지 또는 조종실 잠금 장치 필수)
- 관련 법률과 규칙을 재정립하여 기장의 권한을 명확화 필요

4. 승무원에 대한 인식 변화 필요

- 행정당국, 항공운송사업자 등 승무원에 직무에 관한 인식 변화 필요
- 승무원 본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스스로 고민하고 대응
- 기내 불법방해행위 발생시 적극적인 대응 필요(사후 법적대응으로 인한 소극)
- 기내 불법방해행위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강화
- 비 임무 기장의 권한 및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

질문 및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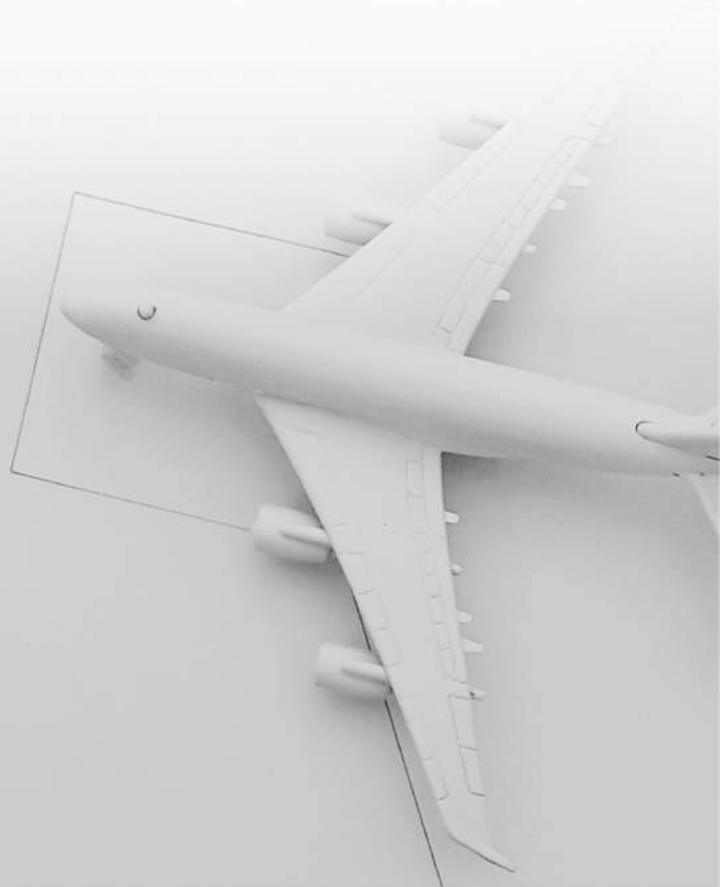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주제발표 4

잠재적 사이버위협에 대한 기내보안 역량 강화 방안

전상훈 교수(극동대학교)





잠재적 사이버위협에 대한 기내보안 역량 강화 방안

2023.06.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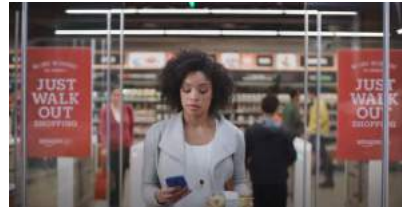
Prof. Sanghoon Jeon
randyjeon@gmail.com

목차

- 정보와 기술
 - ✓ 컴퓨터 네트워크 & 인터넷
 - ✓ 항공기 기내 및 지상 연결
- 항공 보안 모델의 변화
 - ✓ 효율성 편의성 증대
 - ✓ 사이버 위협
- 사이버 공격 유형
- 항공기 시스템 및 데이터 통신 변화
 - ✓ 항공기 사이버 보안 위협 - EFB
 - ✓ 항공기 보안 위협
 - ✓ 사회 공학 - 정보수집/해킹메일
- 정보보호 요소 - ISO 27000s & FAA
- 보안 고려사항 - 잠재적 위협

정보와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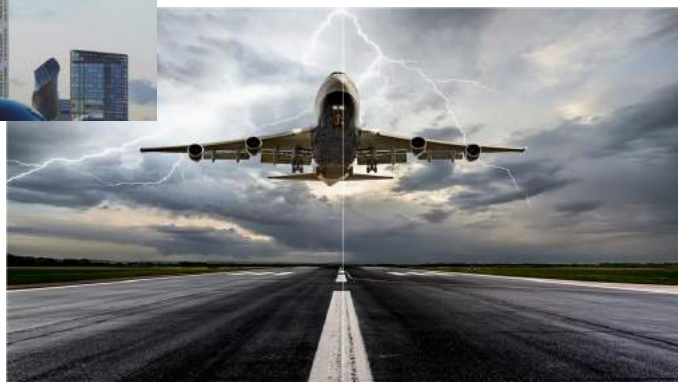
- Just walk out Technology
- Cars & Communication



Page 3

정보와 기술

- What kind of Information will be hacked !



Page 4

컴퓨터 네트워크 & 인터넷

- 이더넷 (Ethernet)

- ✓ IEEE 8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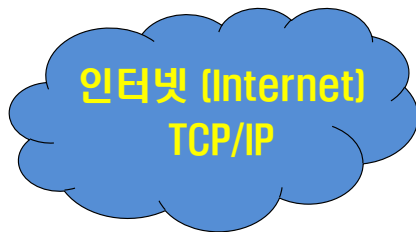
- 상용 이동 통신 (Cellular, Mobile Network)

- ✓ 2G (GSM), 3G (CDMA), 4G (LTE), 5G (5G NR, 5G-Advanced)

- 무선 네트워크(Wireless Net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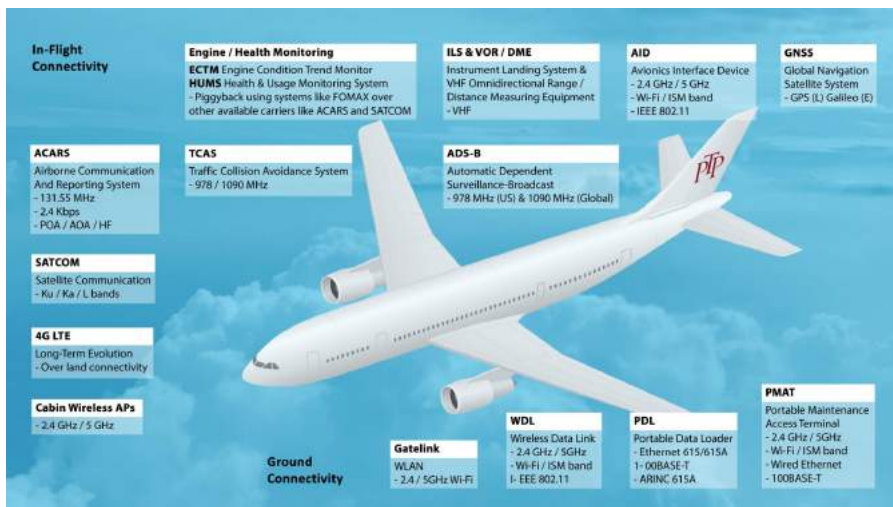
- ✓ 802.1x

- Wi-Fi (IEEE 802.11)
 - Bluetooth (IEEE 802.15.1)
 - ZigBee (IEEE 802.15.4)
 - Beacon



항공기 기내 및 지상 연결

- In-Flight and Ground Connectivity



항공기 기내 및 지상 연결

- In-Flight and Ground Connectivity



Page 7

How are we being **attacked**?

CYBER THREATS

COMPUTER SYSTEM AND AIRCRAF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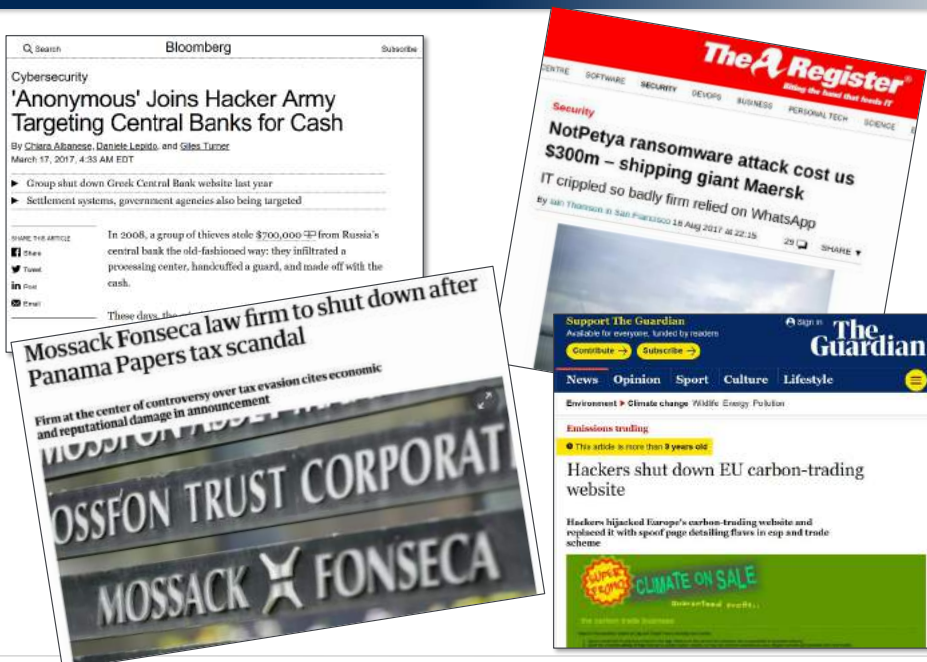
항공 보안 모델의 변화 – 효율성 편의성 증대

- 항공기의 기본 보안 모델 은 물리적,
- 효율성, 안전 및 승객의 편의를 이유로, 항공기와의 연결성 증가
 - ✓ 물리적 보안 모델 침식
- 지상에서 항공기와 공항 항공사의 통신에, Wi-Fi, RF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 ✓ 데이터 교환 및 승무원(노트북/테블릿/핸드폰) 사용 증가



Page 9

항공 보안 모델의 변화 – 사이버 위협



Page 10

항공 보안 모델의 변화 - 사이버 위협

제주항공-에어서울 탑승객 개인정보 유출됐다

일자 : 2021.02.26 22:01 | 수면 : 2021.02.26 22:12 | 교통부 기자



항공사의 예약 관련 시스템 공급사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의 고객 정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제주항공 등에 따르면 전 세계 주요 항공사 예약 관련 시스템을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 미국 데이타센티가 해킹을 당했다. SITA는 2019년 7월9일부터 10월29일까지 SITA 서비스를 항공사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항공사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 SITA 시스템을 이용하는 항공사는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이다. 해당 기간에 제주항 에어서울 항공기를 탑승한 이들의 정보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은 고객 이름과 유효기간 카드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해 규모를 파악 중이다.

이날 제주항공은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워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온라인 사기결제 등

진에어, 전국 공항서 비행기 '올스톱'...전산시스템 장애(종합)

일자 : 2021.11.12 16:08

홍규선 기자

[광명 현민도 올말 못하고 대기

출발지	편명	상태	
제주	LJ 302	도착	
제주	LJ 412	지연	
제주	LJ 304	지연	
제주	OZ 8904	도착	
09:07	제주	RS 932	도착
09:10	제주	TW 734	도착
제주	LJ 402	지연	
13	부산	TW 896	지연

현재까지 주요 항공사, 여객기 도착 출발 지연

진에어-대한항공-제주항공-기타 항공사 - 11월 12일 현재 제주공항 도착 지연 현황 (진에어 도착 지연 4시간 55분, 제주항공 도착 지연 2시간 30분, 대한항공 도착 지연 1시간 30분, 기타 항공사 도착 지연 1시간 30분)

(서울=연합뉴스) 최광민 홍규선 기자 = 진에어(272445)는 여객 시스템 장애로 전국 공항에서 항공 수송과 비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진에어 항공사 직원들이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의 고객 정보 유출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주요 공항에서 여객기 도착 출발 지연이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진에어 홈페이지는 시스템 장애로 인해 항공편 변경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진에어 홈페이지는 "항공 예약자료를 복구 중"이라고 발표하며 "도보로 귀환"을 권고했다.



제주도 주요 10곳에서 제주항공이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원에서 남원사 항공편이 운항되고 있다. (연합뉴스)

항공 보안 모델의 변화 - 사이버 위협

COMPUTERWORLD
FROM IDG

INSIDER | Sign In | Register

NEWS

U.S. sounds alarm on hacking of passenger jets, air traffic control

Government report says the FAA needs to do more to ensure safety in the skies

By Martyn Williams
Senior Correspondent, IDG News Service | APR 14, 2015 4:45 PM PT



NEWS

NATIONAL SECURITY & DEFENSE

U.S. Warns Small Planes Are Vulnerable to Hackers

By MAUREAD MCARDLE
July 20, 2019 3:10 PM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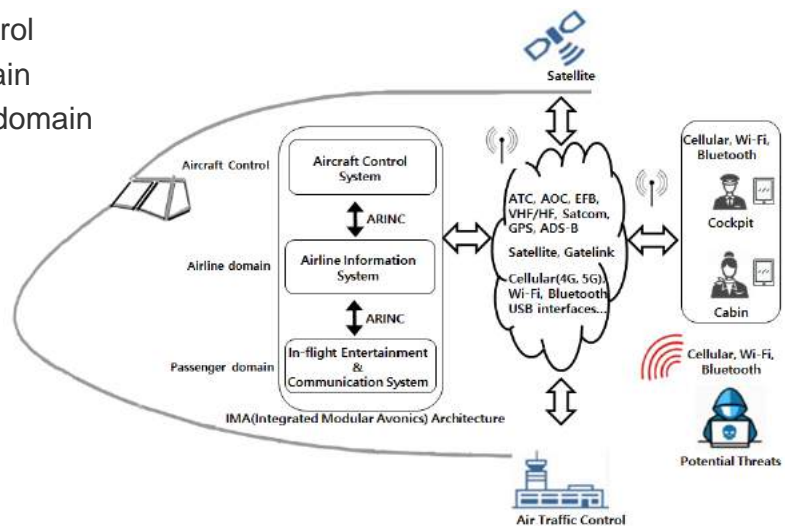
사이버 공격 유형

- System Attacks (OS & Application **Vulnerability**)
- Network Attacks(**Session hijacking, Man-in-the-middle, DoS, DDoS,...**)
- Malicious Code & Malware
 - ✓ Ransome, **Ransomware**,...
- Social engineering
 - ✓ **Phishing, Smishing**,...
- Zero-day Attack
 - ✓ **Zero-Day Exploit**
-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항공기 시스템 및 데이터 통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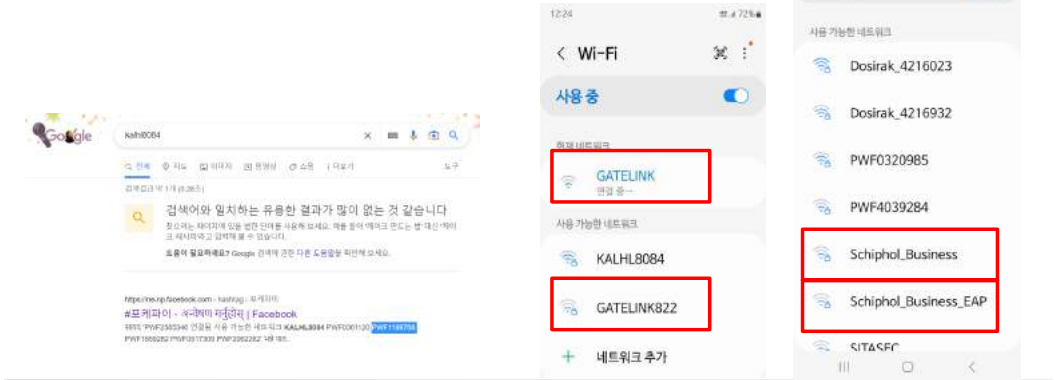
- Architecture
 - ✓ Aircraft control
 - ✓ Airline domain
 - ✓ Passenger domain



항공기 사이버 보안 위협 – 지상

- 지상, 항공기 기내(EFB, 객실 승무원 단말기(Tab) 접속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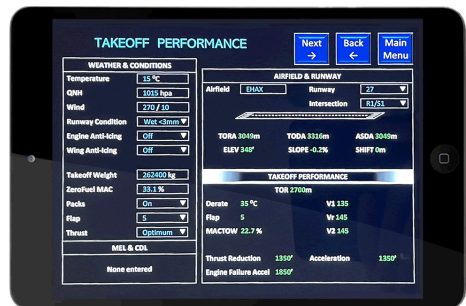
- ✓ WPA/WPA2 PEAP Cracking
- ✓ DoS attack



Page 15

항공기 사이버 보안 위협 – EF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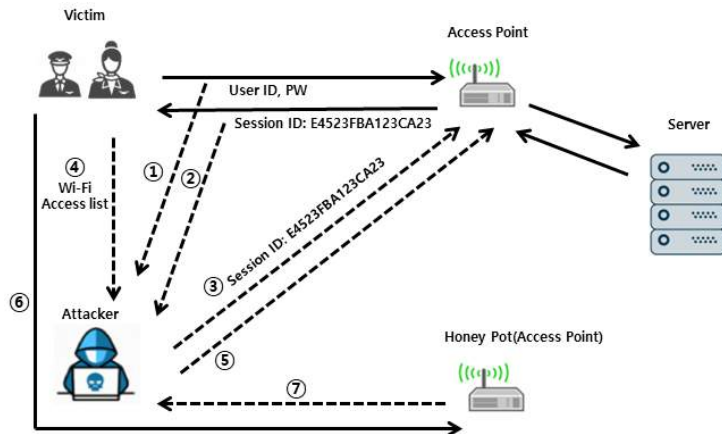
- Electronic Flight Bag (EFB)의 무결성은 항공사와 장치에 따라 다르다
- 안전하지 않은 공용 네트워크 사용(Public Wi-Fi)
- EFB 운영체제
 - ✓ Windows, Linux
 - ✓ Austrian Airlines, Lufthansa (Surface Pro 3)
 - ✓ American Airlines, Delta Airlines (Apple iPad)



Page 16

항공기 사이버 보안 위협

- Gathering Information(Email)
- Session hijacking, Man-in-the middle, Dictionary Attack
- Spoofing Attack
- DoS Attack



Page 17

사회 공학 (Social engineering) – 정보수집

- www.koreanair.com
✓ gdHong@koreanair.com
- www.flyasiana.com
- koreanairmail_noreply@koreanaircorp.com

Page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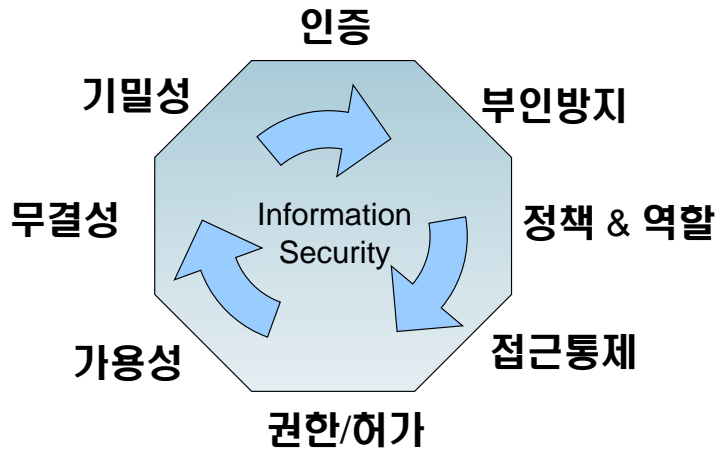
사회 공학 (Social engineering) – 해킹메일

- 제목: AB0991편 (입국/출국) 베이징 전자 신고서 작성
 - ✓ AB0991 중국입국시, 전자신고서 작성 필요합니다.
 - ✓ 입력방법: **CLICK** 하여 신고서 작성 요망

Guess where most **IT technology** go?

RESPONSE METHODS

정보보호 요소 – ISO 27000s & FAA



Page 21

보안 고려사항 – 잠재적 위험

• 잠재적인 위험

- ✓ 잘못된 유지보수 메시지
- ✓ 항공기 시스템에 손상된 소프트웨어 로드
- ✓ 항공기 시스템을 감염시키는 멀웨어
- ✓ 항공기 시스템 인터페이스에 액세스하기 위해 온보드 무선을 사용하는 공격자

- ✓ 무선 인터페이스 서비스 거부
- ✓ 항공기 시스템에 액세스하는 개인 기기의 오용
- ✓ 항공기 시스템 인터페이스에 액세스하기 위한 오프보드 네트워크 연결 오용
- ✓ 안전 필수 시스템의 서비스 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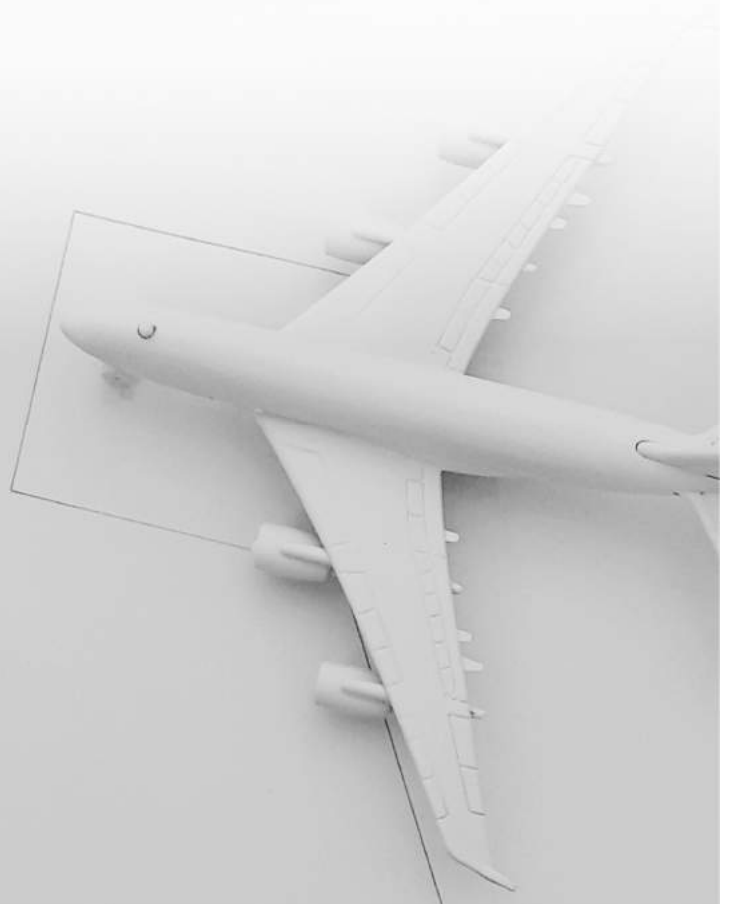
Page 22





연구윤리교육

박원태교수 (청주대학교)



1

연구윤리 교육

- 한국항공보안학회 윤리현장
- 한국항공보안학회 윤리위원회 규정

▶ 한국항공보안학회
(연구윤리위원회)

2

한국항공보안학회 윤리현장

- ▶ 한국항공보안학회는 항공보안 학술의 연구, 보안기술 발전 및 보안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항공보안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한국항공보안학회 윤리현장”을 제정하여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와 회원의 윤리성을 함양한다.
- 1. 우리는 학회 활동을 통하여 항공보안과 관련된 학술, 보안기술의 발전 및 보안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익증진에 노력한다.
- 2. 우리는 학회의 설립목적과 학회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학술 활동과 사업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한다.
- 3. 우리는 타인의 연구나 의견을 자신의 연구 또는 의견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 4. 우리는 학자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한다.

한국항공보안학회 윤리위원회 규정

제1장 연구윤리 규정

제2장 투고자 등에 관한 윤리규정

제1장 연구윤리 규정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한국항공보안학회의 회원이 학술연구 활동 및 사업을 하면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며, 연구 부정행위의 방지 및 부정행위의 여부를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본 학회는 물론 회원의 연구윤리를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 임원의 의무

- 학회의 회장 및 임원은 본 학회의 회칙, 학회지 규정 및 본 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장 연구윤리 규정

■ 제3조 연구윤리규정 서약

- 학회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학술발표를 하는 자는 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학회에서 요구하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자 점검표
 2. 저작권 이양 동의서
 3. 연구윤리 확인서
 4. 투고 신청서

제1장 연구윤리 규정

■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해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 게재 행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등임.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를 거짓으로 만드는 행위
 2. **변조** : 연구자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하여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하여,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 :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 부여 행위
 5. **부당한 중복 게재**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방해**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1장 연구윤리 규정

▶ 제5조 표절의 금지

-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를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는 것을 금한다.

▶ 제6조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의 금지

- 회원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는 것을 금한다.
-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학회의 편집이사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 저자의 순서

1. 논문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인 지위에 관계없이 논문의 연구에 공헌 또는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 표시하여야 한다.
2. 단순히 어떠한 직책에 있다고 하여 논문의 연구에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의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제1장 연구윤리 규정

▶ 제8조 연구윤리규정 위반 보고

1. 회원의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한 경우 또는 명백한 연구윤리규정 위반사태가 드러날 경우, 그 위반사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2. 보고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하되, 익명 보고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구체적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는 경우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9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회 이사회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편집위원장은 당연직 포함)한다.
2.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장 연구윤리 규정

▶ 제10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 및 의결

- 1. 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으로 통하여 폭넓게 조사 후 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 위원장에게 적절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 2. 위원회 구성원의 의결원은 평등하고 원칙적으로 제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 1. 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 및 관련 자료를 통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규정 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 2. 모든 이해당사자는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3.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4. 조사 결과 무혐의로 판정된 회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위원회는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장 연구윤리 규정

▶ 제12조 연구윤리규정 위반 회원의 권리 보호

- 1.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2. 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회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3.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위원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연구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4. 연구윤리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조사/처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5. 조사 결과 무혐의로 판정된 회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위원회는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장 연구윤리 규정

▶ 제13조 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 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의 명단 및 서명 날인
 7. 기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제1장 연구윤리 규정

▶ 제14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 1. 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회원에 대하여 회장에게 적절한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 2. 회장은 위원회의 건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여부 및 징계내용을 결정한다.
- 3. 이사회는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하여 경고, 징계 확정 후 3년 동안 논문 투고제한, 게재취소 사실의 공지 및 게재취소, 회원자격 정지 또는 박탈, 한국연구재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 기타 적절한 조치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4. 위원회는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징계 결정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5.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6. 징계 결정이 끝난 이후에 판정 결과를 당사자 및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고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장 연구윤리 규정

▶ 제15조 연구윤리 교육

- 학회는 연구윤리를 증진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윤리교육을 실시한다.
- 윤리교육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을 통해 최소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 제16조 윤리규정 준수

- 회원 및 투고자는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논문의 투고 및 발표 시에는 윤리규정서약서의 양식에 반드시 서명,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 논문 유사도 검사 실시

- 학회의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제공하는 논문 유사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기존 논문들과 유사도 비율이 10%를 넘을 때는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통해 논문의 심사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제1장 연구윤리 규정

▶ 제18조 논문 심사자 소속

- 학회는 연구윤리를 증진하기 위해 논문의 심사자가 투고자와 동일한 대학 혹은 기관에 소속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9조 규정 개정

-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투고자 등에 관한 윤리규정

- ▶ 제1절 투고자
- ▶ 제20조 부당한 저자표시의 금지 및 저자의 표시순서
 - 논문의 투고자는 본 규정 제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부당한 저자표시의 금지 및 본 규정 제7조에 따른 저자의 표시 순서를 준수한다.
- ▶ 제21조 중복 게재 및 이중 출판의 금지
 - 논문의 투고자는 본 규정 제6조에 따른 중복 게재 및 이중 출판을 금지한다.
- ▶ 제22조 논문의 수정
 - 논문의 투고자는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근거 및 이유를 편집위원회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2장 투고자 등에 관한 윤리규정

- ▶ 제2절 편집위원
- ▶ 제23조 편집위원의 기본적 책임과 의무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투고자의 인격과 학자로서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 제24조 공정취급 의무
 -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투고자의 성별/나이/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2장 투고자 등에 관한 윤리규정

▶ 제2절 편집위원(계속)

▶ 제25조 심사의뢰시 의무

-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의뢰시 투고자와 개인적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자를 피하여 가능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 해당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26조 비공개 의무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2장 투고자 등에 관한 윤리규정

▶ 제3절 심사위원

▶ 제27조 심사위원의 기본적인 의무

-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히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 내용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28조 공정평가 의무

-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투고자와의 사적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위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2장 투고자 등에 관한 윤리규정

▶ 제3절 심사위원(계속)

▶ 제29조 평가의견 작성 시 의무

-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 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투고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 제30조 비밀준수 의무

-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회지가 출판되기 전에 투고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감사합니다.

